

16. 不實工事防止綜合對策

資料提供：監査院

감사원의 공사감사방향

南 政 秀(감사원 기술국 제1심의관)

I. 머릿말(부실공사 실태와 문제점)

후진국적 악폐 「부실공사」가 아직도 만연

1. 부실공사 실태

- 절대 안전해야 할 교량·아파트 등 주요구조물까지 부실
 - 최근의 팔당대교·창선대교·올림픽대교·신행주대교 붕괴
 - 선로지반붕괴로 인한 구포열차 전복사고
 - 청주우암아파트 붕괴,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등
- 민생과 직결되는 시설공사까지도 부실시공
 - 도시가스 배관시설·상하수도시설·뒷골목 포장·주택가 석축 부실시공등
- 부실공사의 사례 끊임없이 발생

〈공사감사 관련 지적현황(감사원)〉

	'81	'85	'92
건 수	400	398	565
금액 (백 만 원)	4,562	7,751	38,200

- 일제시대 보다는 공사의 질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망국병으로 인식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평창강)의 상방림교의 경우
 - △ 1927년에 건설된 「구 상방림교」는 1994. 1현재까지 견재
 - △ 1986년에 건설한 「신 방림교」는 교각침하로 1992년에 보강

2.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

- 인명과 재산피해등 손실막대
 -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막대

〈건설업 재해현황('92)〉

	전산업(A)	건설업(B)	비율(B/A)
재 해 자 수	107,435	36,225	33.8%
손 실 액 (억 원)	9,315	3,702	39.7%
〈간접 손실액(억 원)〉	〈46,570〉	〈18,500〉	

※ 건설재해율이 일본의 약 6배

-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복원비용 소요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

- 국내총생산의 15%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낙후로 건설시장 개방시 국민경제 및 사회전반에 악영향 초래 우려

〈건설업의 대 GDP(국내총생산)비중〉

	국내총생산(A)	건설업(B)	구성비(B/A)
1980	38,041	3,186	8.4%
1992	231,726	35,127	15.2%

※ 금액단위 : 10억원

- 건설공사의 부실은 국내고정자본의 50%가 부실하게 되는 결과

〈건설업 부문 고정자본 형성액 추이〉

	총고정자본형성(A)	건설부문(B)	비율(B/A)
1980	12,226	6,219	50.9%
1992	82,004	49,260	59.6%

※ 금액단위 : 10억원

→ 건설공사의 부실은 국력의 부실화와 정부신뢰도 손상에 직결

3. 부실공사 대응 여건상의 문제점

-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권능은 크나 역할은 미흡
 - 건설시장에 대한 공공공사의 비중이 37%('92년 기준)에 달하여 최대의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건설시장에 대한 영향력 지대

〈국내건설시장구조('92년도, 일반건설 공사)〉

전 체	공공공사	민간공사	기 타
341,032	125,655	199,962	15,414
(100%)	(36.9%)	(58.6%)	(4.5%)

※ 금액단위 : 억원, 기타 : 주한외국기관공사 등

- 정부는 건설관련 제도운영, 정책수립 및 민간공사의 허가·검사권 보유
- 그러나, 실제업무를 추진하는 전문인력의 규모와 능력부족으로 실질적으로 권능에 상응하는 역할수행 어려움

〈건설기술자의 취업분포현황('9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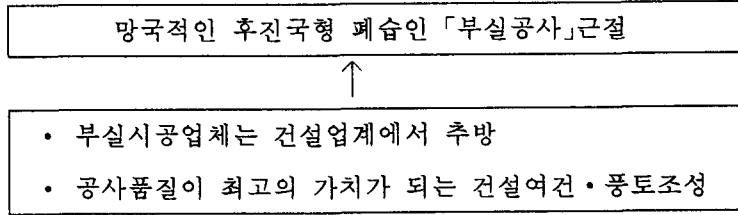
계	건설업	공공기관	기술용역법	교육기관등기타
158.4천명	77.6천명	12.3천명	10.8천명	57.7천명
(100%)	(49%)	(7.7%)	(6.8%)	(36.5%)

※ 기술사, 기사1급 및 기사2급

- 부실공사에 대한 정부대응의 한계
 - 종래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무감각과 관습적 행태로 인식하는 등으로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
 - '87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추진
 - △ 그러나, 종합대책의 내용이 제도개선에 치중되고, 추진주체도 총괄기관없이 기관마다 기관편의주의적으로 추진
 - △ 공사목적물의 품질확인 수단강화나, 부실공사 관계자들의 책임강화등 실질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 결여
 - △ 개선된 제도도 현실성이 없어 이행부진

II. 부실공사감사 추진방침

가. 추진목표



나. 추진과제

-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의식 정착 유도
- 시공업체의 성실·책임시공여건 조성 촉구

다. 추진중점

-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사방향·부실에 대한 엄단방침의 사전 예고 및 육성
- 감사방법의 과학화 및 저가수주·부실시공·부당하도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감사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방향 제시·개선 유도
- 특히, 문민정부출범 이후의 위법 부당시공 관련업자 및 공직자 엄중문책

라. 추진방법 및 전략

(1) 추진방법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방향의 사전예고·홍보·교육 등으로
 - 건설업계 및 공사발주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책임의식 정착유도를 위하여
 - 부실공사에 대한 집중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기준 강화
 - 부실시공업체 및 관련공직자의 건설업계 및 공직추방등 특단의 조치
- 성실·책임시공여건 조성 촉구를 위하여
 - 부실공사 감사결과 분석된 제도상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 관련부처에 통보
 - 관련부처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체제 강화
- 「부실공사」감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부실공사 관련자료의 전산화·체계화

－ 부실공사감사의 과학화, 새로운 감사기법개발 추진 등

(2) 추진전략

단 계 별	부 실 공 사 실 태	감 사 추 진 전 략	추진년도
I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공사 만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도나 부실우려가 큰 공사집중감사, 일벌백계 부실공사 원인분석, 성실·책임시공 풍토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진감사 	'94~'95
II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참여자 책임의식 정착 단계 부실공사 부분적 간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개선 관련제도의 완벽한 개선촉진감사 간존부실공사 집중감사로 부실공사 근절 	'96

III. 부실공사감사 세부추진 방향

가. 감사방향의 사전예고·홍보 및 교육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이 「뿌리내리도록」 감사방향예고·홍보 및 교육 실시(관계부처와 협의)

(1) 공사관계책임자 회의 개최

○ 회의목적

-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새로운 감사방향 사전예고 및 교육으로 공사관계책임자들의 책임의식 고취 및 홍보
- － 당원의 부실공사 근절의지 전파효과 거양 및 건설업계의 공감대 형성 촉구

○ 대 상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련단체 등의 건설공사 관계책임자

(2) 자체감사 담당부서의 공사감사중점 협의

- 감사원의 「공사감사방향」을 관련기관에 통보, 각급행정기관의 공사감사중점을 「부

실공사방지」에 두도록 협의

→ 부실공사 감사효과 극대화 도모

(3)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의식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 건설공사관련 훈련기관·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교육과정·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

→공사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 도모

- 주요공공시설물에 공사설계자·시공업체·시공기술자·감리자·감독자 및 검사자 등 공사참여자의 「명판 영구부착제도」 시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

→ 건설 기술자의 자부심과 후대에 책임지는 풍토 조성

- 건설업 관련단체 등에 대한 홍보·순회교육 등도 적극 검토시행

나.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책임의식 정착 유도

부실공사 업체와 관계공직자는 건설업계와 공직에서 추방하여 책임시공의식이 정착되도록 풍토조성 유도

(1) 부실공사자료 중점관리 및 공사품질 집중감사 실시

- 감사자료의 전산화

- 감사대상공사 자료를 체계화하여 전산관리
- 입력자료의 상시검토·분석체제 구축

- 공사감사 초점을 공사시공분야에 집중투입

- 제한된 감사인력을 시공분야에 집중투입
- 저가입찰공사·보증시공공사·부당하도급 공사등 부실시공 우려공사를 감사대상공사로 선정, 집중감사 실시

(2) 공사감사 방법 개선

- 물량위주의 감사에서 정밀 공사품질 감사로 전환

- 부실 우려 공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감사기간으로 정밀검사 실시
- 감사의 과학화 및 심층 감사를 위하여 비파괴 검사장비·정밀측정장비·공사품 질평가용 Software등 활용 확대

- 공인검사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및 「전문가 자문단」구성

- 국립공업시험원등에 공사품질 정밀검사 전담반 구성협조 및 상시 지원체제 구축
- 자체 감사요원 활동강화조치 및 「부실공사」 감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부실공사 추적감사 실시
 - 부실공사는 끝까지 추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관계자 엄단 및 손해배상등 경제적 부담 부여
- 공사현장 관리실태 및 준공후 하자발생 실태 감사병행
 - 공사착공시부터 하자보증기간 만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감사 실시

(3) 감사결과처리 기준 강화

-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요구기준 강화조치

부실시공 유형	종 전	향 후
• 설계규격 미달 자재로 시공	• 공사비 차액 회수	• 재시공
• 설계보다 내구성이 떨어 지게 시공	• 공사비 차액 회수	• 내구성저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등 경제적 부담 부여 • 내구성 저하정도 클때 재 시공
• 조잡시공	• 기능상 지장이 없을 경우 면책	• 설계상 허용기준 초과시 재시공

- 부실시공업체등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

구 분	종 전	향 후
• 부실시공업체 제재	• 감사원 : 제재 조치통보 • 관계부처 : 과태료 부과처 분등 가볍게 처리	• 부실공사 잦은 시공업체의 영업정지등 조치요구, 부정 당업자 통보 병행 • 중대한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면허취소, 현장대리인의 기술자격 정지등 조치요구
• 하도급금액부당 삭감등 불법하도급 시공업체제재	• 감사원 : 제재 조치통보 • 관계부처 : 과태료 부과 처 분등 가볍게 처리	• 불법하도급 시공업체의 영 업정지 • 고발등 조치요구, 부정당업자 통보 병행

○ 부실공사 관련자 명단공개, 이력관리 조치

- 시공업체 · 현장시공책임자 · 감리자 등의 명단을 발주처 · 일선 행정기관에 통보, 부실시공 관련자 이력관리
- 면허관리기관에 통보, 면허 또는 자격수첩에 통보사항을 기록하는등 이력관리방안 강구

○ 부실공사 감리 · 감독 · 검사자의 문책기준 강화

- 부실시공 내용이 감리 · 감독 · 검사과정에서 용이하게 확인가능한 경우

종 전	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 검사자 주의 또는 징계 • 감리자는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처리후에는 변상판정 • 고의입증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조치 검토 • 감리업체에 대한 배상요구등 경제적 부담부여, 중대한 부실공사의 경우 감리용역업체 등록취소 • 감리원 자격취소등 조치요구

○ 부실설계 용역업체의 제재 강화조치

- 명백한 설계 잘못으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되거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 경우

종 전	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 관계부처에 통보 • 관계부처 : 경고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요구, 부정당업자 통보 병행 • 설계책임자의 기술자격정지등 조치요구 검토

다. 성실 · 책임시공 여건 조성 촉구

(1) 시공업체의 책임시공여건 조성

시공업체가 자기책임하에 성실시공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설계의 질확보 방안강구

-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환등 설계용역대가 기준의 현실화
- 설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와 책임심사제 확립 등 설계심사의 강화

방안

- 부실설계 용역업체와 설계책임자에 대한 제재 강화등
- 시공업체에 최대한의 자율권 부여 방안강구
 - 감리, 감독의 포괄적 권한 관련규정 개선방안
 - 하도급자 선정에 대한 지나친 관여완화등 원도급자의 자율권 보장 방안등
- 공사비 적산 기준의 합리화로 적정한 공사비 지급 방안 강구
 -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기준등 통제가격체제의 개선방안등
- 공사현장관리여건 정화 방안 강구
 - 공사현장관리 관련 인·허가 및 단속규정 현실화, 감독관실 운영경비·단속판서 운영 경비보조 관례등 악습 일소 방안등
- 불공정한 계약관행·건설공사 관련제도 개선방안 강구
 - 발주자 우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 발주자 우위의 계약조건
 - 발주자의 일방적 설계변경 요구
 - 시공업체의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 묵살
 - 계약외의 부수시설 시공등 계약외 사항의 부당요구
 - 불분명한 설계내용을 악용, 시공업체에 지나친 희생강요 등
 - 공사 및 설계용역등의 예산편성·입찰·계약·감독·검사·대금지급·건설기술 관리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분석, 개선
- ※ 건설업계 건의등 적극 수용, 개선방안에 반영
- 무면허업체 하도급·위장하도급등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방안
- 「188 신고센터」에 신고된 부실공사요인·사례 등을 분석, 기동점검 및 개선방안에 반영
 - 공공공사·대형공사 등의 부실사례 기동점검
 -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부실공사 요인이 되는 각종 기준이나 제도·부실공사 사례 등의 신고내용을 분석,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
- ※ 「감사원 188신고센터」-신고자 보호조치

(2) 책임감리·감독 여건 조성 촉구

감리·감독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여건 조성

- 감리·감독자의 권한과 책임 관련규정 개선방안 강구
 - 감독관 복무규정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 등
- 감리대가 기준·감리감독관실 운영경비의 현실화 방안강구
- 감리·감독근무경력 우대제도 운영방안 강구
 - 건설기술자 면허시험 응시자격기준에 감리·감독경력 우대 방안 등
- 철저한 품질확인 위주의 감리·감독 제도확립 방안강구
- 전문적인 검사방법 및 적정검사시기 부여 방안강구
- 성실한 건설기술자가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방안강구

(3)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획기적 전환 촉구

① 준공검사 제도의 개선

- 준공검사의 개념전환
 - 물량확인을 위주로한 계약이행여부 확인목적
 - 품질확인을 위주로한 시공평가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
- 준공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육성, 전문기관에 의한 준공검사 방안강구
-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상응한 우대조치 방안강구
 - 평가결과를 입찰자격 심사시 업체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 주요구조물의 구조안전기준 미달등 평가결과 불량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 방안등

② 하자검사의 강화

- 하자검사 기능의 보완강화 방안 강구
 -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정기 하자검사 제도화 방안 등
- 하자검사 결과의 활용 방안 강구
 - 하자검사결과에 따라 시공업체 제재요구 또는 시공업체 능력평가에 반영등

IV. 맺음말

다같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부실공사」발본색원

- 이를 위하여는
 - 각급 행정기관 등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자체 개선의지 필요
 - 모든 건설공사참여자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 필요
- 그렇게 되어야만
 -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막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유산상속 가능
 - 우리 건설기술의 신뢰성과 기술능력 향상으로 국제사회 경쟁 가능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제도의 운용방향

尹 柱 秀(건설부 기술관리관)

건설공사의 부실은 설계, 입찰제도, 시공, 감독, 사후관리등 전분야에 걸친 복합적 소산으로, 건설부는 '93. 5 대통령각하께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수립, 보고한 데 이어 각종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고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한 바 있음.

또한, '94년도를 「부실공사 없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부실방지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94. 1. 12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대통령각하께서도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중형을 가하고 면허취소·검찰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분부하신 바 있음.

I. 배경

- 근래 창선대교, 신행주대교, 청주우암아파트 붕괴사고와 구포열차전복사고, 한국가스공사 부실시공 보도 및 독산동 건축물 기초지반 붕괴등으로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바 있음
 - 우리 건설업체는 해외에서는 국제수준의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공사의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많은 공사하자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은 공사하자의 원인은 설계·시공·감독등 건설공사의 전과정에 걸쳐 제도적, 관행적으로 구조적 부실원인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임.
-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음

II. 부실원인

- 시공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통하여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고 결손원인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여 결국은 부실공사를 유발함
 - 특히 건설업의 속성상 공사비 전용이 용이하고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여 금융비용도 큼
-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 부족
 - 부실시공업체와 해당 기술자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였음
 - ※ 시공중인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업체는 영업정지(최장 6월), 관련기술자는 부제재
 - 설계와 시방을 엄격히 따르지 않고 적당주의 공사시행
 - 정부의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운용도 엄격하지 못했음
- 공사감리제도의 도입이 일천하여('90. 1부터)감리체제가 미정착
 - 정부공사의 경우 저가주의 원칙과 감독공무원의 자질부족, 감리회사에 감리의뢰시에 책임한계도 불분명하였고
 - 주택사업등 민간공사의 경우 감리자를 시공업자가 선정하므로 공정한 감리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 감리회사의 감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감리대가도 낮아 우수한 감리원의 확보가 곤란하였음

III. 부실방지대책 및 추진현황

- 건설업체에 책임의식 부여를 위해 부실시공 업체, 대표자, 기술자에 대한 처벌강화

〈주요내용〉

- 업체 : 영업정지(6월)→면허취소
- 대표자, 기술자 : 부제재→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여 착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건설업법 시행령에

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건설업법)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부실설계·시공·감리로 인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주요구조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사업주체(주택건설촉진법)

〈추진현황〉

— 공공시설 : '94. 7부터 시행

— 공동주택 : '94. 3부터 시행

※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93. 12

- 주요공사에 대해서 시공 능력있는 업체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 도입

〈주요내용〉

— 목 적

- 교량, 터널, 지하철 등 주요공사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업체별 시공능력 평가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여 허용

— 대상공사 :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14개 주요공종

-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댐, 터널, 발전소, 간척, 준설, 쓰레기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항만, 공항, 교량(길이 100m 이상)

— 심사방법

- 시공경험(40), 기술능력(40), 경영상태(20)

• 신인도(±10)

※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5), 하도급실적우수자(+5)

부정당업자·영업정지 (-5)

예정가격 60%미만 2회이상 낙찰자(-3)

최근 1년간 재해율이 건설업평균재해율 초과자(-3)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적격자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20~30인 범위내에서 선정

〈추진현황〉

- 기 시행('93. 7부터)

○ 건전한 하도급관행 정착유도를 위해

부대입찰제 시행

〈주요내용〉

- 목 적

- 정부발주 PQ대상공사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제출시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하수급인등 [하도급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견적능력 제고, 전문건설업체 육성, 하도급거래의 양성화 유도

- 대상공사 : 예가 100억원 이상인 14개 주요공종공사

- 철도, 항만, 지하철, 고속도로 등 PQ대상공사와 동일

〈추진현황〉

- 기시행('93. 10부터)

하도급 직불제 시행

〈주요내용〉

- 내 용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부분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가능

- 직접지급 대상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및 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시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발주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예가의 85%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의 파산·부도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

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추진현황〉

- 기시행('93. 6부터)

※ 건설업법시행령 '93. 6 개정완료

불법하도급 제재강화

〈주요내용〉

-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화

- 일괄하도급 : 영업정지(1년이내)→면허취소
- 허위보고 : 과태료(250만원이하)→영업정지(6개월이하)

〈추진현황〉

- '94. 7부터 시행

※ 건설업법 '93. 12 개정

○ 감독과 감리업무를 감리원에게 일원화하기 위해 책임감리제 도입

〈주요내용〉

- 감리원의 권한

- 시공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조치가능

※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감리원에게 설계변경확인권 및 기성, 준공검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강화)

	감 리 원	감 리 회 사
건 설 기 술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소 요구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수뢰등으로 형법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손해배상 책임 • 5천만원이하 벌금(양벌규정)
예 산 회 계 법		• 입찰참가 제한

〈추진현황〉

－ 기 시행('94. 1부터)

- '94. 1~2 : 기존 23개 책임감리회사 활용
- '94. 3부터 : 전환등록 후 본격시행

○ 감리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감리비에산의 제도화

〈주요내용〉

- － 용지비, 시설비, 감리비를 분리계상
- － 감리대가 상향조정(100억원의 경우 1.4%→4.1%)

※ 건설공사 감리용역대가 요율 비교

공사비 (억원)	현행 과기처용역대가 요율 (%)	감리대가 요율 (%)	대비 (%)	비고
50	1.45	4.78	330	
100	1.41	4.05	287	
200	1.37	3.42	250	
500	1.33	2.77	287	
1,000	1.30	2.39	184	
2,000	1.28	2.03	159	

〈추진현황〉

기 시행('94. 1부터)

○ 건설한 감리회사 투입을 위해 민간아파트에 대한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선정

〈주요내용〉

- －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리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 － 개정내용
 - 현행 : 발주자(사업주체)가 선정
 - 개정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

〈추진현황〉

－ '94. 3부터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 '93. 12개정

○ 시공후에도 장기간 질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보수기간 연장

〈주요내용〉

－ 3~년→최대 10년

• 민법 제671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등 : 10년이내

기타 구조 : 5년이내

〈추진현황〉

－ 공공시설 : '94. 2부터 시행

－ 공동주택 ; '94. 3부터 시행

－ 민간건축 : '94. 7부터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업법 개정 : '93. 12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94. 2예정

○ 부실공사를 시행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주요내용〉

－ 공사부실기록 유지·배포

• 대 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받은 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

• 관리방안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업체는 관보게재와 동시 발주기관 통보 건설업체 전산정보 체계화 추진(대한건설협회)

－ 사전입찰자격심사시 감점

〈추진현황〉

－ 기 시행('93. 9부터)

○ 명예를 건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주요내용〉

- 건설업체, 설계자, 감리자, 시공기술자 명단의 영구부착(공공공사의 경우 30억원이상)

〈추진현황〉

- 공공시설 : 기 시행
- 민간시설 : '94. 7부터 시행
- ※ 건설업법 개정 : '93. 12

정부계약제도의 운용방향

韓 錠 吉(재무부 국고국장)

I. 머릿말

UR 정부조달시장등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입찰·계약등 관련제도를 국제관행에 맞춰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93년초에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저가심의제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바꾸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발주한 대부분의 공사가 예정가격의 60% 수준에 낙찰·계약됨으로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아지고, 이러한 덤핑입찰은 건설업체의 무모한 수주경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바, 향후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아래 '93. 5월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책에는 공사의 시공관리 강화문제, 입찰·계약관련제도 개선, 불법하도급근절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의 일환으로 '93년말 예산회계법을, '93. 9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낙찰율 추이

(단위 : %)

'90	'91	'92	'93.5
91.79	89.41	86.32	61.44

자료 : 조달청

'94년중에도 지난해말 개정된 예산회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93년중에 새로 도입하여 시행중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부대입찰제 등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제도개선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중에는 지난해말 UR정부조달협정 타결에 따른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I. '93 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축소조정

중전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예정가격 20억원이상의 공사(전기·전기통신, 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에 적용하였으나, 이를 100억원이상 공사(전기·전기통신, 전문공사 등은 10억원이상)로 대상을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100억원미만공사(전기·전기통신, 전문공사등은 10억원미만)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5%이상을 입찰한 자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에서 100억원미만의 공사를 제외한 것은 '92. 11월 건설업면허의 신규발급으로 건설회사가 종전 918개사에서 1,694개사로 776개사가 늘어났으나, 신규건설회사의 대부분이 중·소건설업체로 100억원미만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고 따라서 100억원미만의 공사입찰에 있어 과당경쟁이 특히 심하여 최저가낙찰제를 계속 시행할 경우, 해당공사의 부실화는 물론 중소건설업체의 도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93. 7월부터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중 지하철·댐·교량등과 같이 기술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예정자의 자격을 입찰전에 정부가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최저가낙찰제에 의거 발주된다 할지라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고,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때에도 감독·감리를 철저히 할 경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축소 조정한 '93. 9월이후 공사낙찰율은 아래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 1〉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축소조정이후 낙찰율 추이

(단위 : %)

'92	'93.5	'93.8	'93.9	'93.10이후
86.32	61.44	64.70	75.60	85.0

〈표 2〉 정부공사의 낙찰제도 연혁

기 간	낙찰제도
62년 1월~71년 12월	최저가낙찰제
72년 1월~75년 12월	부찰제(예정가격 80%이상 입찰자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
76년 1월~81년 2월	최저가 낙찰제
81년 3월~83년 6월	부찰제(예정가격 85% 이상 입찰자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
83년 7월~93년 2월	저가심의제(직접공사비 미만 입찰인 경우 발주관서가 적정 공사 시공여부를 심의)
93년 2월~93년 9월	최저가낙찰제(20억이상공사) 제한적최저낙찰제(20억미만공사)
93년 9월 23일이후	최저가낙찰제(100억이상공사) 제한적최저가낙찰제(100억미만공사)

나. 차액보증금 현금납부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억제

종전에는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서의 경우는 차액의 2배)중 낙찰자가 선택하여 차액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때에는 차액보증금중 예정가격의 85% 상당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덤핑 입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한 동제도가 보증서로서 납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덤핑입찰을 방지하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10% 이상 증액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덤핑으로 낙찰되

기만 하면 시공중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건설업체의 안이한 자세가 불식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

예정가격 : 100억원

낙찰율 : 65%

차액보증금

i) $100 - 85 = 15$ 억원(현금) 선택
 $(100 - 85) \times 2 = 30$ 억원(보증서)

ii) $85 - 65 = 20$ 억원(현금)

따라서 차액보증금은 i)+ii)가 됨.

다. 덤핑입찰로 낙찰된 공사에 대한 선고권 배제

예정가격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입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연고권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연고권이란 당해공사와 관련되어 추후에 발주할 예정인 공사에 대한 기득권(건설업체 상호간에 기득권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덤핑입찰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예정가격의 50%미만으로 낙찰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일로부터 2년동안 해당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되거나 접속되는 단지조성·하천·도로등의 공사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도입

정부가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93. 7. 1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심사기준을 명료하게 객관화 하여야 하고 심사에 필요한 인력 및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그동안 덤핑입찰이 주로 발생되었고, 심사기준 마련이 용이한 토목공사위주로 선정, 우선 100억원이상인 댐·지하철·교량·발전소건설공사등 14종의 공사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항목으로는 실적(40%), 시공능력(40%), 경영상태(20%) 및 신인도(±10%)로 되

어 있습니다.

마. 부대입찰제 도입으로 하도급자 보호강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에 시공중 하도급할 부분과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예정자를 산출내역서에 기재하여 입찰하여야 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대입찰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원수급자가 덤핑입찰후 하도급자에게 저가하도급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 하도급업체가 보호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업계의 준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지하철·댐·교량·공항·고속도로·간척·준설·항만·터널·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철도 등 14종의 특수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바. 대가지급지연이자 면제제도 폐지

대가지급에 있어 준공금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기성금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 대가에 대하여는 지연기간동안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단서를 두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기성금·예산배정이 지연되어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등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지연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지연이자에 대한 면제제도 때문에 정부가 지연이자를 지급한 실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불공정 행위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동제도를 폐지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Ⅲ. '94정부계약제도 운용방향

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지속 추진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등의 보완

'93년도중에 새로 도입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및 부대입찰제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함으로써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PQ제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대형토목공사 위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의 건축공사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감점제도를 활용,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사실상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93년말 예산회계법이 개정·시행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전 최장 5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종전보다 평균 2배정도 연장되도록 보완할 예정이며, 특히 5층이상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3) 기술위주 낙찰자 선정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적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설계점수가 극히 낮은 자 즉 조잡한 설계를 한 자도 입찰금액만 낮으면(덤핑입찰)낙찰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건설업체의 설계능력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는데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동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상위 4위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적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잡한 설계를 한 자가 덤핑입찰자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노무비기준의 현실화

'94년도중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는 노무비의 단가는 '93년도에 비하여 평균 5%가 인상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93년도 이전에 체결되어 '94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노무비의 단가는 '93년도 단가에 일률적으로 7.5%를 인상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체결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1) 지역공동계약제도 도입

지방에서 발주하는 100억원이상인 대형공사를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때에는 그 지역소재 중소기업 1인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업체에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건설업체로부터 기술전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93. 12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97. 1. 1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므로 동제도는 '96. 12.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2) 분할발주금지제도 폐지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기적으로나 물량기준으로 이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대형화되어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기에는 도급한도액, 면허등의 요건에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폐지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공사의 내용·특성등을 감안 발주관서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전문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UR정부조달협정 체결에 따른 정부회계제도 정비

(1) 정부조달협정 성립배경과 가입국

○ 성립배경

- 정부조달은 비상업적 거래로서,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됨(GATT 3조8항)
-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각국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증대, 정부조달이 세계 교역의 큰 부분을 차지(10% 내외)하게 됨에 따라 세계교역의 진정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비관세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협정성립

1979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의 MTN협정의 하나로 정부조달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제거를 목적으로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81. 1. 1부터 발효되었으며, 1988. 2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바 있음.

○ 가입국(23개국)

- EC(12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2) 신협정문의 주요내용('93. 12. 15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을 타결하여 신협정문을 채택함)

○ 협정적용 범위

- 적용대상기관

- 기존협정의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의 실질적 감독하의 기관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하의 기관으로 확대

- 적용범위

- 기존협정의 물품의 조달계약에서 물품 및 건설, 서비스의 조달계약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력·운송·상하수도 등 기존 협정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협정적용 범위에 포함

○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각 회원국은 무조건적으로 타회원국 원산의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산품 및 공급자에 부여하는 조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내국민대우), 타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에 부여하는 조치에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됨(무차별원칙)

○ 기술사양

- 기술사양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조달물품의 설계 (design)보다는 성능(performance)을 요건으로 해야하며, 이는 국제표준 및 각국의 기술협정이 공인한 국가표준에 기초를 두어야 함.
- 특히 특정상표나 특허, 또는 특정디자인이나 형태, 특정원산지나 생산자에 한한다는 요건을 제시해서는 안됨.

○ 입찰절차

- 입찰가격

조달기관은 입찰가격과 관련하여 외국입찰자 상호간 또는 국내외 입찰자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 자격심사

입찰참가조건은 계약이행능력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국한하고 입찰참가자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감안하여 자격심사를 하여야 함.

- 입찰공고

조달기관은 공개입찰 또는 지명입찰시 부속서에 열거된 출판물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GATT공통어(영어, 불어, 스페인어)의 하나로 계약의 주대상, 응찰시한, 계약관련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 요약공고를 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최저가격입찰서류를 제출한 자나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특정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정함.

○ 이의신청절차

- 각 회원국은 특정조달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급자들이 조달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룰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이의신청절차는 법원에 의해 수행되거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사법절차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함
- 이의신청절차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 협정의 위반사항을 교정하고 사업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달절차의 증지를 포함한 신속한 시정조치
 - 이의제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판정의 가능성
 - 협정의 위반사항 교정 및 손해 또는 피해의 보상. 단, 손해나 피해의 보상은 응찰준비나 이의 제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한정시킬 수 있음.

○ 정보제공

-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법규, 결정, 절차규정을 부속서에 열거된 출판물에 즉시 공포하여 타 회원국 및 공급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달기관은 낙찰후 60일이내에 낙찰결과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국의 요청시 낙찰심사탈락, 입찰참가거부, 유찰등에 대한 사유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함.

○ 예외규정

국가안보, 공공질서,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지적재산권보호, 장애인, 자선단체, 재소자노동에 의한 생산품의 보호등을 위해서는 협정적용배제가 가능함.

○ 협정발효시기

한국, 홍콩을 제외한 여타국가에 대해서는 신협정은 '96. 1. 1부터 발효하고 한국, 홍콩에 대해서는 '97. 1. 1부터 발효기로 함.

※ 우리나라의 최종양허안

	양허 기관	양허 범위
중앙 정부	○ 42개 중앙행정기관 - 안기부등 4개 안보관련 기관제외	○ 물 품(13만 SDR) ○ 서비스(13만SDR) ○ 건 설(500만SdR)
지방 정부	○ 6개시 및 9개도	○ 물 품(20만 SDR) ○ 서비스(20만 SDR) ○ 건 설(1,500만 SDR)
기타 기관	○ 한전, 한국통신 등 23개 정부투자기관 - 한전 : 중전기품목 일부제외 - 한국통신 : 통신제품 및 일반제품 제외	○ 물 품(45만 SDR) ○ 건 설(1,500만 SDR)
서비스 및 건설	○ 중앙, 지방, 기타기관 - 기타 기관 서비스는 비양허	○ 서비스 : 사업, 통신, 환경, 운송등 49개 업종(금융서비스 제외) ○ 건설 : 일반 및 전문건설업 7개 업종
공통 예외	○ 재판매 관련 구매 ○ 중소기업 특별구매 ○ 농산물 구매 ○ 인공위성 구매(발효후 5년간)	

(3) 정부조달제도 개선

1) 정부 조달법령체계의 개선

○ 현행제도

- 현행 예산회계법은 특별히 내·외국인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 적용할 별도의 규정으로 외자구매계약규정과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동 특례규정은 입찰공고기간, 입찰보증금, 입찰서 개찰후의 조건변경, 대가지급, 분쟁처리등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조달제도 전반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폐지
- 조달체계 전반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

2) 예정가격 작성

○ 현행제도

- 조달기관은 각각의 조달에 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입찰방법과 낙찰자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공포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개정하여 조달기관이 물품이나 공사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반관리비율이나 이윤율등도 정할 수 있게 하며, 예정가격작성의 기초가적인 정부노임단위가 시중노임보다 낮게 고시되는 현제도를 개선

3) 입찰방법

○ 현행제도

현행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제한된 조건하에서 지명경쟁 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명경쟁입찰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기관이 발주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자격있는 공급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령상의 수의계약사유를 축소하여 협정문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조문의 수의계약사유를 변경하여 협정문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4) 자격심사

○ 현행제도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지하철·댐공사 등 일부공사에 대하여만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자격만 갖추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개선방향

- 신속적인 참가심사규정 마련
일반적인 사항·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각 조달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세부심사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자격심사가 이루어

지게 함.

- 각 조달기관에 인증공급자 명부 작성을 권장하여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5) 입찰공고기간

○ 현행제도

- 입찰공고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전 1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로부터 7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함.
- 긴급한 경우,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전 또는 개찰일전 5일까지 공고할 수 있음.

○ 개선방향

- 협정문에서 정한 입찰공고기간에 적합하도록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함.

6) 입찰공고의 방법 및 내용

○ 현행제도

- 예정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인 경우(공사 : 3억원, 제조 : 1억원, 물품의 구매, 기타용역 : 5천만원)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 입찰공고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개선방향

- 관보를 부속서 II의 출판물로 사무국에 등록하고 모든 입찰공고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 양허대상 입찰시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함.
- 요약공고는 영어로써 하며 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

7)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지명

○ 현행제도

-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명의 기준은 공사의 경우는 도급한도액, 특수한 기술보유, 제조 기타의 경우는 기술·기계·기구, 생산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지명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개선방향

- 도급한도액 위주의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을 개선하여 업체의 도급한도액, 공사이행실적, 신뢰도, 재정상태, 기술적 능력보유등을 실제계약이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공급업자를 발주관서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명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8) 낙찰제도

○ 현행제도

- 최저가낙찰제가 원칙이며 일정금액이하의 공사 또는 용역계약은 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종합낙찰제,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등 가격외에 설계능력, 품질등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음.

○ 개선방향

- 종합낙찰제, 설계·시공입찰제도, 대안입찰제도등을 활성화
- 가격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계약이행능력, 품질, 성능등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9) 입찰이의신청절차

○ 현행제도

- 입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공식기구는 없으나 재무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분쟁을 처리함.
- 특례규정에 특정조달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 개선방향

- 협정문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부에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찰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

(4) 향후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입찰·계약관련제도를 국제관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

도하고, 업계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킴.

- 건설부, 상공부, 조달청등 관계기관과 학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검하여 국내업체의 충격을 최소화
- 조기('94말)에 예산회계법령등을 개선하여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시행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업계의 정부조달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케 함.
-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해외조달시장의 동향과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급하여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케 함.

2) 세부 추진계획

가) 법령정비대상

- 예산회계법
- 예산회계법시행령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및 규칙
- 외자구매규정
- 회계예규, 회계통칙 등

나) 법령정비추진일정

- | | |
|-------------------------|------------------|
| ○ '94. 12. 31 | 예산회계법등 개정완료 |
| ○ '95. 1. 1~'95. 12. 31 |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시행 |
| ○ '96. | 시행결과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 |
| ○ '97. 1. 1 | 정부조달시장 개방 |

깨끗한 환경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